

#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50분 추가 변론 뒤 끝냈다

여야 합의·본회의 의결 놓고  
최상목 대행·국회 측 맞서  
선고 날짜 곧 결정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권한 침해인지를 가리는 헌재의 심판이 종결됐다. 최 대행 측과 국회 측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의 유효성과 국회가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선고날짜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 유효한가 = 헌재는 1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변론은 50분만에 끝났다. 선고 날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헌재 재판관 선출 시 '여야가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관행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관행이 없는 상황임에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확인하겠다'며 임명을 미룬 것은 임명을 외주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지난해 국민의힘이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위원을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두고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공문이 제출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 대행 측 법률대리인은 "헌재소장 임명에 야당이 합의했다는 점을 전제로(공문을) 보낸 것인데, 이후 야당이 부인하면서 합의가 무효화됐다"고 답했다. 공문을 보낸 이후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한쟁의 청구 본회의 의결 필수인가 =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해 국회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장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재판관 선출과 관련해 정해진 관행이 없다"면서 "절차상 규정에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도 국회의 권한 행사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률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최 대행 측은 "헌법상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국회는 일반 의결절차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고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장에게 합의제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사를 단독, 또는 직권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은) 의사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정이 신설되거나

헌재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의사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의 공백이 있어도 국회의 권한 행사는 보장돼야 하고, 국회의장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번 사건이 국회의 '권한' 침해에 다투는 만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헌법과 국회법에 국회의장에게 그러한(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의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는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 측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최 대행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해 논란을 불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정권 연장” 45.2% “정권 교체” 49.2%

리얼미터 여론조사

김영록 지사, 처음 이름 올려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의견이 3주 연속 오차 범위 내 흐름을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5.2%,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49.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6%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0.1%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0.8%p 하락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결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영남권에서는 정권 연장이 우세했고, 호남·충청·서울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정권 연장 65.1%, 정권 교체 28.7%)과 부산·울산·경남(51.5%, 43.2%)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한 반면, 호남권(22.5%, 69.3%)과 충청권(43.6%, 56.4%), 서울(43.5%, 51.1%)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인천·경기(46.3%, 47.4%)에서는 두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2.8%, 더불어민주당이 40.8%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2.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9%p 낮아졌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3.4%, 개혁당 2.4%, 진보당 1.0%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에 없는 무당층은 8.1%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시 조기 대선의 범진보·범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범진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0.8%를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 7.7%, 김부겸 전 국무총리 6.5%, 이낙연 전 국무총리 6.0%, 김경수 전 경남지사 4.5%, 우원식 국회의장 3.5% 등이었으며, 최근 대선 출마의 뜻을 밝힌 김영록 전남지사(0.8%)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범보수 진영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5.1%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 11.1%, 오세훈 서울시장 10.3%, 홍준표 대구시장 7.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7.4%, 안철수 의원 5.1%였다. 최근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한 개혁당 이준석 의원은 4.0%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헌재 “검찰조서尹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 가능”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지휘부 등이 검찰에서 제출한 내용이 담긴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가 일부 군 지휘관이 헌재심리에서 증언을 거부하자 공식입장을 밝힌 것으로, 윤 대통령 측은 "더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헌재는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면서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계엄군 지휘부 등이 검찰 공소장과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해도 헌재가 신빙성을 따져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조서를 증거로 사용한 선례를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당장 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윤 대통령의 '국회

부패',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기존 검찰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차 변론기일에서 이 전 사령관에게 변호인이 동석했는지와 조서내용을 읽고 서명받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따라 이 전 사령관의 검찰조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할 때만 공범 등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헌재는 증언과 조서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재판부가 신빙성을 따져 필요하면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재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인데,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일부 다르다.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증거와 증인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 사항으로, 재판부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신속한 심리보다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가 중요하다"며 "헌재가 증거 법칙을 지나치게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 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 중심주의와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 학 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http://www.kwangshin.ac.kr)

민음이 있는 대학 · 민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123길 46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